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제정 사유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선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우수 그린비즈 신청대상 (안 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

□ 우수 그린비즈 선정취소 (안 제14조)

- 선정 기업의 자진 반납, 실적허위 제출, 거래정지 처분 등이 있는 경우 지정취소

3. 의견제출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전화 : 042-481-4402, FAX : 042-472-3287)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을 위한 우수 그린비즈(Green-Biz)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녹색경영 평가”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그린비즈(Green-Biz)”란 녹색경영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그린비즈평가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그린넷”이란 우수 그린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greenbiz.go.kr)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녹색경영 평가지표 개발·제도개선, 평가 및 등급결정, 그린넷 관리·운영 등 우수그린비즈 선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7.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9.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

립하는 것을 말한다.

10.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우수 그린비즈 신청대상) ①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우수그린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4. 중소기업청장이 별도 규정한 사항

제4조(업종의 구분) ① 그린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

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녹색경영평가)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평가전문가에게 녹색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수준 평가 및 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 및 검증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경영 평가 절차, 운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그린비즈선정 제도의 공정한 진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우수그린비즈제도의 평가시스템 적절성
2. 관리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3. 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팀 및 검증평가위원) ①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평가 및 점수 산출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3. 타 중소기업의 우수그린비즈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1호의 수준평가 및 점수산출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 1인~3인을 검증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④ 평가팀을 구성하는 전문가의 자격·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그린비즈 평가기준) ① 관리기관은 우수 그린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정하여 그린넷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평가지표를 그린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그린비즈 평가기준은 제1항의 평가지표로 한다.

제10조(우수 그린비즈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의 평가결과 그린비즈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기업을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우수 그린비즈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12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우수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우수그린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따라 확인서하는 재발급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연장) ① 관리기관은 그린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린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린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그린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유효기간 전까지 그린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발급번호의 확인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그린비즈 선정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우수그린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우수그린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5.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② 관리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제1호에 따라 우수그린비즈 선정을 자진반납하고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정취소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수수료 등) 관리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및 납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평가수수료를 책정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기업이 평가결과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기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우수그린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①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그린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그린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그린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그린넷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지침 제정·운영) 중소기업청장은 그린비즈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규정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
2. 규정 제12조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
3. 규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우수그린비즈 선정 취소 사유 접수 및 취소 사실 공고
4.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우수그린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우수 그린비즈 신청을 하였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후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우수 그린비즈 관련 규정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